

우리 山林養苗의 當面課題

本會理事 李 在 石

1. 前 言

지난 1990年은 養苗로서는 受亂의 해 였다. 4月中旬에는 때아닌 晚霜으로 秋播를 한 것 나무가 막 싹이나서 잎이 펼 무렵 全國的으로 地方에 따라 差異가 있을 뿐多少의被害를 다행이다.

또 6月下旬부터 8月에 걸친 50余日間의 장마에 浸水나 洪水의被害는 없었다 하더라도 繼續 내리는 비에 土壤水分의 過飽和狀態로 苗木의 뿌리가 썩어水分吸收가 안되는 狀態에서 장마 以後 불볕더위로 몇일간 地溫이 40~50°C를 오르내리는 사이에 暑害로 많은 苗木이 죽고 말았다.

그結果 우리 會員들이 生產하는 苗木中 成苗가 約 4百万本 幼苗가 約 1千3百万本이 災害를 입었다.

이것은 金額으로換算하여 約 6億원에 達한다. 이러한 天災는 하늘이 주는 것이지만 苗木生產에 있어近50%以上의 生產費가 人件費인 養苗에 있어 人夫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보다 더 어려운 現實下에 人夫賃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판에 政府 労賃單價를 適用하여 告示價格을 算定할 형편이고 보면 앞으로 이 養苗業이 健在할 수 있을 것인지 조차 의문이 간다.

元來 山林苗木이란 市場性이 없어 不得己政府造林用에 供할 수밖에 없고 보면 무엇인가

우리 山林養苗도 突出口를 찾아야하는 地境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래서 本論은 우리 山林養苗를 둘러싼 當面한 課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1990年度에 生產한 成幼苗의 需給展望은 어떠하며 또 山林養苗의 制度 또는 規定改正을 要하는 主張과 우리 養苗協會 會員들이 깊고 넓어가야할 技術開發 내지는 技術所得向上 問題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前述한바와 같이 지난 1年은 各種 災害가 겹쳐서 失意에 차있는 마당에 來年봄에 山出할 苗木도 둑어서 上車할 人夫가 큰 걱정이라 한 숨짓는 會員 여러분에게 시원한 대답은 할 수가 없고 이 어려운 난간을 克服하는데 이 글이多少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2. 苗木 需給上의 問題

今年에 各道에서 養苗施業指定을 받은 우리 會員들의 施業指定量은 全國을 합하여 成苗가 約 4千万本 幼苗가 9千6百万本이다.

그래서 實際 施業을 한 것은 成苗가 5千2百万本 幼苗가 1億2千4百万本 生產計劃으로 施業을 하였다.

다시 말하여 成苗는 30% 幼苗는 20% 内外로 超過施業을 한 셈이다.

施業한 生產計劃대로 生產이 되었으면 成苗

가 1千3百万本 幼苗가 2千8百万本이 더 生產 되어야 한다.

그러나 晚霜의 害, 水害, 暑害로 成苗가 約 4百万本, 幼苗가 1千3百万本이 災害를 입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生產計劃은 單位面積當 得苗本數가 種苗事業 實施要領 基準에 依한것인바 이 種苗事業 實施要領 基準이 너무 높아서 해마다 生產實績이 이 基準과는 樹種間에 크게는 20% 적게는 10%의 差異가, 나서 推算컨데 이로 因하여 成苗가 約 5百万本 幼苗가 3千万本以上 減量이 생길 展望이다.

그렇다고 보면 當初 成苗施業生產計劃量이 1千3百万本을 초과했다. 하지만 災害數量과 基準生產을 못한 物量을 합쳐서 9百万本이므로 우리 會員들 指定量을 需給하고 잘 남아야 4百万本 程度이다.

그러나 이 4百万本도 國有林造林量 擴大에 따른 民營苗 供給分과 超過施業이 별로 없는 山林組合 災害物量을 充足하자면 이 殘量도 결국 다 需給이 되어야할 形便에 있다.

또 여기에 있어서 幼苗의 경우는 별써 災害量과 基準生產을 못한 物量을 합치면 많은 幼苗가 不足하다는 結論이 나온다.

筆者가 過去 10余年間 統計를 보면 幼苗의 경우 生產施業計劃이 200%가 되어야 다음해 成苗 100%生產에 支障이 없었던 過去 經驗으로 보아 많은 幼苗需給上에 蹤跌이 올 것으로 보아진다.

그래서 各道는 공히 92年度 造林用 苗木需給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為하여 道關係當局과 協議하여 그 地方實情에 맞는 一年生 成苗生産을 為한 種子確保에 萬全을 期하여야 될 줄 안다. 그리고 苗木需給問題에 덧붙이고자하는 것은 苗木需給契約問題이다.

只今은 經濟民主化를 부르짖고 있는 흐름속에 政府가 價格을 告示하는 品目도 隨意契約을

하지말고 競爭入札에 붙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豫算會計法 施行令에도 隨意契約이 可能한 條項에서 政府告示價格도 隨意契約을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 山林苗木같이 特別한 制度의 장치가 없이 競爭入札에 붙이는 것은 어려운 問題點이 있어 豫算會計法 施行令 隨意契約 條項에 其他不得已한 事由로 因한 것은 隨意契約이 可能하다는 法規定에 依해 그동안 수의 계약을 해왔으나 1989년 12月 26日 豫算會計法 施行令 改正때 이 不得已한 條項마저 없어지고 말았다.

때문에 今年봄에 各道가 苗木契約上에 多少의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5항 제5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대행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隨意契約이 可能하도록 되어 있어 산림청이 산림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을 新設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사업용종묘판매업 자격을 갖추어 등록한 자에게 묘목의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법령개정으로 이제 정부산림사업용 묘목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법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政府告示價格에 依한 苗木需給上의 隨意契約制度는 인전가는 發展的인 方向으로改善되어야 할 것은 分明하다.

政府勞賃單價에 依하여 決定되는 告示價格은 언제나 苗木價格이 現實化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養苗技術의 向上

모든 分野에 걸쳐 技術이 日進月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山林養苗의 경우는 近者 發展

하기 보다는 後退하는 感이 적지 않다.

그 理由인즉 造林物量 激減으로 因하여 于先一人當 施業物量이 山林養苗를 해서 專業으로 生計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 積極的으로 技術開發 또는 向上을 해야되겠다는 意志가 보이지 않는데 主原因이 있다고 보아진다.

一人當 年間 施業量이 外形으로 約 4千万원 内外이고 보면 農事를 큰 災害 없이 잘 했을 경우 純所得이 4百万원 程度이므로 機械化를 하거나 施設養苗를 할 일거리가 되지 않아 그저 從來에 하는 그대로 踏襲을 하고 있는 實情이다.

筆者도 一年에 몇번씩 全國의 苗圃現場을 돌아보고 있자마는 苗圃場에 過去熟練된 人夫는 모두 다른 分野로 떠나가고 技術이 거의 없는 老弱者들이 動員되고 있으니 苗圃技術은 고사하고 作業能率面에서 正常人夫의 切半도 안되는 工程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苗木도 하나의 商品인데 苗木의 包裝技術같은 것은 많이 後退를 했다.

養苗技術이란 여러가지가 있지만 其中 가장 重要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물관리라 할 수 있다.

다른 樹種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落葉松같은 것은 圃地選定에 있어 落差를 제일 重要視해야 하는데 이點을 等閑히 하는例가 많다고 보았다.

그리고 논의 양묘의 경우 床長은 10m로 끊어야 한다.

種苗事業 實施要領에 床長이 20m로 되어 있는 것은 밭을 基準한 것이다. 그리고 논양묘의 경우 步道의 깊이도 사람의 무릎 높이까지 파야 한다.

以上의 것들은 물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라는 내용이다.

現在의 우리 養苗技術이 全般的으로 種苗事業 實施要領에 있는 單位面積當 得苗基準本數를 生產 못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나 물管理 調節을

잘못하여 苗木이 標準規格以上으로 過大한 苗木이 많이 生產되는 圃地일수록 生產數量이 減量되는 것이一般的이다.

그리고 幼苗生產의 경우 大部分의 圃地가 得苗基準量의 절반 밖에 生產高를 못 올리는 理由는 日除施設을 하느냐 안하느냐 또는 물 관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影響을 받지마는 보다 큰 原因은 薄播에 있다.

다시 말하여 種子를 적게 뿌리는데 問題가 있다.

낙엽송의 경우 발아율 40%가 되어야 種苗事業 實施要領에 있는 種子量을 播種해야 하는 것을 發芽率 20~30% 되는 것을 基準量을 뿌리는데 原因한다.

그래서 이때는 種子를 倍를 뿌려야 밭을 비우지 않는다.

또 日除網 設置를 권장하는 理由인즉 어린 幼苗가 7~8月 햇볕에 地溫이 40°C를 오르내리는 더위에 갑자기 오는 소나기를 만나면 午前에까지 서 있던 幼苗가 유령처럼 어디로 사라지고 만다.

이것은 더워서 幼苗의 細胞가 張張할대로 張장된 狀態에서 찬물을 맞으니까 原形質分離로 苗木이 죽어 없어지고 만다.

以上의 것들은 養苗技術의 基礎理論에 屬하는 例들이다.

苗圃場에서 비싼 借地料를 물고 땅을 아끼기 爲해서 몇本이라도 더 심을려고 步道도 줄이고 床長도 끊지 않고 하는 苗圃는 生產量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게 된다.

理想的인 苗圃는 나무가 서있는 面積과 步道等 間接으로 제공하는 面積의 比率이 6:4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學校에서 배우는 工夫도 基礎가 흔들리면 進學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養苗技術이 專門的인 것은 至極히 發達되었는지 몰라도 쉽고 基礎的인 問題에 等閑

하거나 基礎가 흔들리는데 注意를 기울일 必要가 있다.

4. 養苗 規程의 改正

養苗의 規程이라함은 苗木의 規格 苗圃作業의 工程 施業基準等으로 大別할 수 있다.

苗木規格의 경우 느티나무 1年生山出苗는 幹長, 根元徑 現行 規格이一般的으로 낮다.

造林地에서 被壓을 防止하고 造林活着을 높이기 為해서는 幹長40cm, 根元徑 3.5mm로 높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只今까지는 1-0苗로 山出하던 것을 可能한이면 1-1苗로 山出할 必要가 있다.

스트로브잣나무의 경우 1-2苗의 幹長33cm, 根元徑 7.5mm는 無理하여 生產이 不可能함으로 幹長25cm, 根元徑6mm로 낮추어야 한다.

實地스트로브1-2苗板에서 現行規格苗生產은 20%内外에 不過하기 때문이다.

편백1-1-1苗의 根元徑7mm는 苗板에서 合格苗의 比率이 50%程度이므로 根元徑을 6mm로 낮추워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서 우리가一般的으로考慮되어야 할 사항은 根長의 規格은 必要가 없다고 본다.

根長은 根元徑과 比例함으로 外國에서는 根長의 規格이 거의 없다.

그리고 苗圃作業의 工程이나 施業材料의 所要基準은 여러가지 問題點이 없는 것은 아니나 近者 苗圃勞動의 質의低下 問題와 關聯한 것이라 이것은 論外로 하더라도 낙엽송1-1苗 곤포당 본수 1,000본은 묶을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묶는다 하더라도 上車 또는 造林地에서 移動이 어렵다.

이것은 곤포당 500본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자작나무 1-0苗도 곤포당 1,500본은 도저히 無理이다. 따라서 이것도 1,000본으로 조정하는 것이合理的이다. 특히 上수리養苗의

경우 斷根作業工程의 現實化는 勿論 斷根作業後 관수와 踏壓工夫工程이 原價에 計算되어야 하며 이 상수리는 直根性 問題 때문에 이것도 1-1苗로 山出할 것을 提案한다.

다음은 施業基準 問題이다.

一般的으로 單位面積當 施業基準 및 得苗基準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其中에서도 잣나무 2-2의 경우 우선 m²당 120본 이식이 곤란하다. 혹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밀식과 도장 苗가 생겨 造林後에活着이 좋지 않다. 그래서 m²당 生立本數 96本에 得苗本數 80本으로 調整을 要한다.

이以外에도 規定上 고쳐야할 點이 많이 있지마는 現行 種苗事業 實施要領(規程)은 그대로 두면 苗圃作業의 機械化는 試圖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이곳에서 外國의 例를 드는 것은 좋은 일인지 모르겠으나 苗圃에서 移植이라는 作業은 되도록이면 안한다.

그代身에 斷根作業을 1年에 機械로 여러번 하게된다.

또 種子代가 너무 비싸고 勞賃 節約을 위해 풋트苗 施設養苗등으로 方向 轉換을 하고 있음으로 우리도 여기에 對한 檢討를 함과 同時に 앞으로 種苗事業 實施要領은 全面改正되어야 할 형편에 있지마는 簡單적이라도 肉眼으로 봐서 無理한 規程은 調整되어야 하겠다.

5. 結 言

우리 山林養苗業은 사람 구하기가 問題인데 獨逸이나 日本의 경우 쌈 外國人夫를 輸入充當하고 있다.

獨逸의 경우, 스페인, 日本의 경우 東南亞 사람들이 철따라 와서 일을 하고 가는 것을 본다.

앞으로 우리도 이것을 檢討해 볼 단계에 온 것이 아닐가 한다.

그리고 政府가 查定하는 苗木代가 現實化가 되지 않아 그 單價에 맞추어 苗木을 생산하다 보니 약탈적 苗圃經營으로 生產된 苗木이 商品의 價值를 지니기가 꽤 어렵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養苗의 構造調整을 通해서 市場性 原理에 依하여 商品價值가 있는 優良苗 生產을 할 수 있도록 競爭關係로 틀바꿈하는 일이다.

解放後 只今까지 近 40余年間을 해오던 制度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이것은 언젠가는 넘고가야할 우리의 宿題요 運命이기도 하다.